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5216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5. 12.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418,549원과 그 중 852,278,404원에 대하여는 2020. 2. 12.부터, 457,276,667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각 2020. 6. 2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 및 2019. 10. 18. 각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였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보증기한은 아래와 같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금액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았다.

| 순번 | 보증일자     | 보증금액        | 보증기한<br>(변경 보증기한)      | 대출은행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
| 1  | 15.11.4. | 306,000,000 | 16.11.3.<br>(19.11.1.) | 기업은행 | 15.11.4. | 360,000,000 |
| 2  | 16.4.12. | 450,000,000 | 17.4.11.<br>(20.4.10.) | D은행  | 16.4.12. | 500,000,000 |
| 3  | 16.4.19. | 540,000,000 | 17.4.18.<br>(20.4.17.) | E은행  | 16.4.19. | 600,000,000 |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피고 A의 구상금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피고 A)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 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F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

## 산한 손해금

###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신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보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말하며,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해 2019. 9. 16.경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가 최초 등록된 이후 2019. 10. 1., 2019. 10. 15., 2019. 11. 12. 연달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13,002,583원을, 같은 날 이 사건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은행에 대출원리금 539,275,821원을, 2020. 2. 18.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대출원리금 457,276,66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811,188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2. 11.까지 연 2.4%의 율에 의하여 계산한 위약금은 2,052,290원( $306,000,000\text{원} \times 0.024 \times 102/365$ )이며, 현재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1) 피고 A는 2019. 1. 10. 피고 A와 거래관계에 있던 'G' 대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 11. 접수 제4279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는 2019. 10.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0. 23. 접수 제112803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하고, 1차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11. 24.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21. 1. 20. 배당기일에서 1차 근저당권의 질권자인 I에게 200,000,000원을, 2차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57,466,9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단101991), 위 배당금이 피고 C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합계 1,309,555,071원(313,002,583원 + 457,276,667원 + 539,275,821원)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1,811,188원, 위약금 2,052,290원의 합계 1,313,418,549원 및 그 중 이 사건 1, 3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852,278,40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0. 2. 12.부터,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457,276,66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0. 2.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피고 A 또는 피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1) 원고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해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된 피고 C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 (2) 피고 C

피고 C은 피고 A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운영하는 J에 팔토시나 워머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A 등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 A는 피고 C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9. 1.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외상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2019. 10. 18.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A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이어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 C은 거래 당시 피고 A의 채무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20. 2. 12. 및 2020. 2. 18.경에서야 피고 A를 대위하여 각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7,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관련 대출금 외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마포구의 2018. 11. 19.자 압류등기, 마포구의 2019. 10. 11.자 압류등기도 각 마쳐져 있는 상태로 피고 A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실제로 피고 A는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가량 경과한 2019. 9. 17.경 최초로 연체 정보가 등록된 이후, 2019. 10. 1., 2019. 10. 15., 2019. 11. 12. 연달아 보증사고를 일으켰는바, 최초

보증사고 발생일인 2019. 9. 17.경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0 내지 18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데, 위 부동산의 시가는 5,725,142,68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12. 20. 기준

감정평가액은 5,725,142,680원인바, 2019. 1. 10.경 및 2019. 10. 18.경 위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인 사실, 반면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 D은행, E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만 해도 5,286,444,028원(306,000,000원 + 450,000,000원 + 531,000,000원 + 3,999,444,028원)이고, 그 밖에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109,235,227원,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 27,550,033원, M에 대한 채무 17,160,000원,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29,935,816원, O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P에 대한 채무 230,766,746원, Q에 대한 채무 38,249,750원, 주식회사 R에 대한 채무 39,055,75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348,958,000원을 합하면 982,911,322원에 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 36,076,500원, 안양시 만안구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13,993,230원, 마포세무서에 대한 세금 체납액 102,385,530원을 합하면 152,455,260원에 이르는바, 총 6,421,810,61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는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1. 10.은 물론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10. 18.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2018. 7.경부터 피고 A와 거래해왔는데, 2018. 12.말경 피고 C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 잔액은 92,000,000원이고, 미도래어음 금액은 180,000,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 A는 2019. 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그 후 피고 A의 2019. 9.말경 외상매출금 잔액이 188,000,000원으로 늘어났고, 미도래어음 금액도 16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 A의 자금난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A의 자금난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피고 C와의 물품거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결국 피고 A는 2019. 12. 9.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피고 C에 대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은 피고 A의 채무초과 여부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2018. 7.경부터 피고 A에게 팔토시나 워머 등을 납품하는 등 피고 A와 동종업계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A는 6개월 어음을 발행하는 등 결제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피고 C이 재하도급업체에 결제를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고 있고(피고 C의 2020. 3. 31.자 답변서 제3쪽),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외상채권이 점차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피고 C의 2020. 3. 31.자 답변서 제4쪽), ③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각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묻는 이 법원의 석명에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1) 사해행위의 취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C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 (2)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2021. 1. 20. 배당기일에 2차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57,466,9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피고 C에게 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2차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위 배당액에 해당하는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이미경, 판사 홍사빈

## 별지1

## 부동산의 표시

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장용지 1035㎡

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공장

1층 533.13㎡

2층 533.13㎡

3층 533.13㎡

4층 533.13㎡

5층 533.13㎡

6층 533.13㎡

7층 112.93㎡,

지하1층 595.63㎡

지하2층 674.71㎡

용도내역 지하2층중 549.41㎡ 주차장

56.90 발전실 및 펌프실

64.40 계단 및 기타

지하1층중 242.61㎡ 공장

248.25 주차장, 104.77 계단 및 기타

1층중 409.26㎡ 공장

5.94 수위실, 117.93 계단 및 기타

2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3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4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5층중 439.35㎡ 공장

93.78 계단 및 기타  
6층중 429.20㎡ 사무실  
103.93 계단 및 기타  
7층중 48.75㎡ 식당  
64.18 계단 및 기타

(이상 주식회사 ☐ 소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동기소 관할)

별지2

채권의 표시

피고 [ ] 이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년 1월 11일 접수 제4279호 및 같은법원 2019. 10. 23. 결  
수 제112803호로 각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21. 1. 20. 확정  
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지금청구채권 금 57,466,982원 및 그 이자채권.  
끝.

